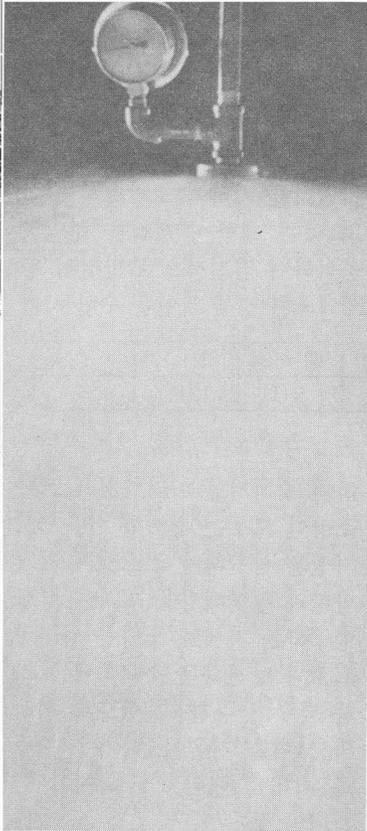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특수건물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하여 이번 호부터 건축물 방재시설(피난·경보·소화시설 및 연소 확대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 한 연
(본 협회 위험관리부 차장)

1.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업화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의 발전,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전력소비의 급증 및 난방 취사용 연료의 고급화 등으로 무수한 화재발생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산업근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 비례하여 화재발생건수도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원인으로는 매년 전기적 원인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물로 인한 화재건수도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는 단순히 '불조심'이란 관념적

또는 표어 등만을 강조하는 인식개선방법 만으로는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기하기 어렵다.

화재는 대부분 인위적 원인 또는 시설의 불비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해 소방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라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시 인명의 안전한 유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 방화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법적 근거로는 소방법 제10조(특수장소의 방화관리) 및 제11

〈표 1〉 연도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 현황

연도	발생건수	피해액(백만원)	연도	발생건수	피해액(백만원)
65	3,141	801	77	5,363	4,457
66	3,077	521	78	5,648	8,454
67	3,482	831	79	5,711	8,851
68	3,909	1,513	80	5,438	8,302
69	4,181	1,556	81	5,851	13,248
70	4,969	2,063	82	6,822	13,153
71	4,412	2,186	83	7,725	12,843
72	3,749	1,621	84	8,562	13,844
73	4,159	1,539	85	8,137	15,409
74	3,901	16,865	86	8,453	11,248
75	4,259	6,064	87	10,144	14,780
76	4,712	8,376			

조(공동방화관리)와 동 시행령 제5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및 제7조(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소방법 시행령 별표1(특수장소)의 소방대상물중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2백인 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천㎡ 이상인 소방대상물.

(2) 공동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소방법 시행령 별표1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다. 방화관리자의 자격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의 자격은 소방법 시행령 제8조(방화관리자의 선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는 방화관리상의 책임도 지니고 있으나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전면적인 신임과 특히 관리적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청원소방관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자

(5)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1년 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7) 위험물 취급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8) 광산 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9)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방화관리자의 임무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어야 하며 소방관에서 발하는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명령이나 유지명령은 소유자, 점유자 등 관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1차적인 책임은 관계자에게 있고 2차적인 책임은 방화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

령을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받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방화관리자는 법률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화관리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또는 관리유지상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를 신청,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관리권한이 있는 관계자가 이를 무관심하게 처리하거나 불안정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할 지라도 방화관리자는 그 임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화관리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관리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방화관리상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소방법상 방화관리자의 임무는 시행령 제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방계획

소방계획은 소방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방화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소방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방화관리업무가 과연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 소방계획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고 이 계획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2)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 (3) 피난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4) 방화구획, 배연 또는 방연구획, 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5) 인원의 수용계획
- (6) 방화상 필요한 교육계획
- (7) 화재시의 소화활동, 통보연락 및 피난유도 등의 훈련계획
- (8)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사항
- (9) 증축, 개축, 수선 또는 구조변경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방계획은 작성하기에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계획수립상

자위소방대세를 확립하고 방화관리상 필요한 모든 여건을 총망라하기 위하여는 사규 또는 사칙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자위소방대 구성원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문식으로 작성하여 경영주의 결재를 받은 후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소방계획 작성상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칙에 관한 사항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할 방화관리자의 권한을 명백히 하고 소방계획의 운용과 적용범위를 정한다.

(2) 예방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할 요원과 각종 설비점검담당자 구성

• 자체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정비계획

(3)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조직의 편성과 운영

• 통보, 연락 및 응급구조

• 훈련과 자위소방대의 장비

또한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극장, 영화관, 카바레, 유키장, 음식점,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의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구획, 경보설비 등의 점검 및 피난유도대책

(2) 백화점 등에서 점포 내의 개수, 증축, 개축 등의 공사 또는 작업을 행할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사용, 용접, 흡연, 또는 위험물 등의 관리

(3) 여관,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는 피난시설, 경보시설, 피난유도대책 및 각 실의 화기관리자 종업원에 대한 방화교육

(4) 기숙사, 공동주택 등에는 복도, 계단 등 공동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

(5) 병원, 진료소, 양로원, 구호시설 등에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명안전을 주로한 피난설비의 유지관리 및 피난유도 대책과 특히 정신병동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감안한 특별대책 강구

(6) 공장, 작업장에서의 기계기구의 정비, 용접, 용단 등의 화기와 가열건조기 등 화기사용시설, 전기시설, 위험물시설 및 고압가스시설 등의 적정관리

(7) 창고 등 저장시설에서의 흡연, 화기사용기구 등의 관리

(8) 위험물제조소 등에서의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대책.

이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다음 호부터는 각종 소방설비 및 방화관리상 필요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을 소개한다. (㉞)